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!

Q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시규정에 의한 모델명 및 기타 제반사항 중 제조연월 표시에 있어서 연도는 스티커에 인쇄를 하고 월 표시는 네임펜 등을 통해 수기로 기록을 하였는데 이러한 표시방법이 규정에 위배가 되나요?

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표시는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물을 묻힌 헝겊으로 15초간, 석유계통의 용제를 묻힌 헝겊으로 15초간 문질렀을 때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.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표기한 상태에서 제품표면상에 관리모델 표시 및 판매 업체명 등을 추가로 표기하는 것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.

Q 콘센트의 규정이 바뀐 후로는 접지극이 있는 제품만 생산하고 있는데, 만약 소비자의 요구 시 안전인증 제품으로 접지극이 없는 콘센트의 생산이 가능한가요?

A 콘센트 및 플러그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인 K60884-1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) 9.1항에서 콘센트는 표준규격(KSC 8305)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무접지형 콘센트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으로 생산이 불가능합니다.

Q HFCO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기 취득한 바 전형적인 HFCO에 광섬유(Optical Fiber)가 실장된 플라스틱 튜브가 삽입되는 구조의 광전복합케이블도 이에 준하는 파생상품 또는 안전인증면제 품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.

A 광전복합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의 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 또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며,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케이블(HFCO)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.

Q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업자는 납세 의무자인 실제 화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로 신고 된 수입대행자까지 범위가 확대되는지 궁금합니다.

A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있는 수입업자는 수입신고필증에 등재되어있는 자이고, 수입대행자 및 수입제품 화주가 함께 등재된 경우에는 실제 화주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자가 제품의 판매유통에 따른 사후관리의 의무가 있으므로 수입신고필증에 등재된 자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등재된 제품의 화주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Q 방향제를 수입,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검사, 인증 등이 필요한가요?

A 방향제(아로마)가 "건물의 실내, 자동차등 일정한 공간 내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사용자의기분을 상쾌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상태(에어로졸상, 젤상, 함침몰상 포함)의 화학제품 및 향초"에 해당될 경우에는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(제2부방향제)로 지정 · 관리됩니다. 방향제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제품의 모델별로 출고전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 ·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· 검사를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. 방향제 모델의 구분은 종류별(액체타입, 에어졸타입, 젤타입, 함침몰타입), 성분별로 구성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방향제(아로마)의 종류와 성분 구성이 다르면 각각 인증받아야 합니다.

Q 안전품질 표시사항에서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(즉, 판매자가 제조사에 완제품으로 매입 받는 경우) 제조자는 표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A 안전품질표시부속서 1의 가정용섬유제품 6.1.1의 개별제품 및 6.1.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, 스티커 등의 표시에 따르면 개별제품 또는 꼬리표 등 어느 한 곳에는 제조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.

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으로 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, 각종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